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
------------	-----

발의연월일 : 2016. 6. 7.

발의자 : 박남춘 · 윤후덕 · 황희

박찬대 · 조정식 · 신창현

김종회 · 진선미 · 심재권

인재근 · 이재정 · 전해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2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5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1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한한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자. ~ 하. (생 략)	-----
2. ~ 4. (생 략)	-----
② ~ ⑥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